

[‘지속가능한 습지’ 2차시 강의자료]

7. 국내 습지관리제도

가. 국내 습지관리제도

습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1992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관련법 및 제도로는 습지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현행 국내의 습지관련법 및 제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습지관련 법 현황

□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¹⁾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협약²⁾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동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습지보전법」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제3조 제1항과 제2항), 내륙습지에 관하여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동조 제3항).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또한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개선이나 람사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기초조사 이외에 따로

1)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이고,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2)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습지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르협약)”이 체결되었다. 동협약은 가입당사국들에게 습지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동·식물 자원의 보고인 습지의 보전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5월 21일 현재 전세계 람사르 등록습지는 1743개소이며, 우리나라는 1997년에 7월에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경남 창녕 우포늪과 강원 대암산 용늪 순천만 갯벌 등 8곳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놓고 있다.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습지상태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습지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 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 습지의 분포, 면적, 생물다양성에 관한 사항
-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및
- 기타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 －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 －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 －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지역을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2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습지보호지역
 -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 －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지역
- 습지개선지역
 - －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 습지보호지역
 -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 －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하는 행위
 - － 광물의 채굴 행위
 - －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 －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정부가 람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대상습지를 정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정부는 통보한 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보전·관리와 다른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1/4이상에 해당 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이 규정에 의하여 존치된 습지의 생태계변화상황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또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보전·습지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8조).

□ 연안관리법

그동안 연안환경은 45개 관련 개별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왔고 연안습지 역시 각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더욱이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는 주로 좁은 국토의 여건상 간척과 매립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들 개별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연안습지와 주변해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안관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안환경의 보전·이용에 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9년 제정되었다. 동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연안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연안관리법에서 “연안”의 범위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며, 연안육역이라 하면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로 하며,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내의 지역과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항만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km의 범위 안의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지역을 말한다(동법 제2조).

동법은 「습지보전법」상 습지조사와 유사한 연안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³⁾ 기초조사 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동법에서 연안 및 연안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는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정비계획 등이 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⁴⁾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이 통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① 해안선·지형·수심·기온·조수·조류·수 온·퇴적물·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② 인구·고용·지역경제 등 사회·경제 실태, ③ 항만·수산·관광자원·광물자원 및 간척·매립 등 자원이용 실태, ④ 연안수질오염·해양퇴적물오염 등 해양환경오염 실태, ⑤ 재해방지시설·정비필요시설 등 연안재해방지시설 실태, ⑥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4)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소속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①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2조 제1항).

- 연안육역의 범위
- 계획수립대상 지역
-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 연안환경의 보전
-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 간에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밖에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연안육역의 범위, 계획수립대상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및 지형,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 연안의 생태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해역의 이용현황,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각 지역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연안관리지역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끝으로 연안습지와 연안의 지반 및 해안선 등의 침식을 방지하고, 오염된 연안을 정화하기 위해 연안정비계획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정비계획은 10년 단위로 연안정비사업⁶⁾을

5) 이 경우 다음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제13조 제1항 하단): ① 「도시계획법」,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③ 「유통단지개발촉진법」, ④ 「자연환경보전법」, ⑤ 「자연공원법」, ⑥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⑦ 「호소수질관리법」, ⑧ 「수도법」, ⑨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 제4호).

6)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사업으로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②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③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제2조 제4호).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 내지 제14조). 또한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기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시행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후단).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은 특히 연안습지와 관련이 있는 지역들을 이용·관리하는 법률로서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은 1961년 제정되었으며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제1조).

동법은 공유수면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⁷⁾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단서). 허가를 요하는 공유수면 내에서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요하는 행위에는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등이다(제5조 제1항 제1 내지 9호).

-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비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6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가축분뇨·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려가게 하는 행위,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15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습지의 이용 방향은 주로 중앙 부처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으며, 환경부는 습지의 보전을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 수자원 이용 및 하천의 이용·개발 등의 사업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는 등의 규제 수단만을 가지고 있다.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은 연안역 생태계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쉬운 특히 습지의 훼손을 수반하는 간척사업과 관련된 법률로서 1962년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개정되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있어 환경친화적으로 할 것과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연안습지를 포함한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및 대책
 - －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 －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토사의 이동
 - －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동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습지와 관련하여 동법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포함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수립(제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제12조), 개발행위등으로 인한 습지를 포함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제4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습지 등의 자연환경 및 서식지 등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 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⁸⁾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지역에 습지 역시 포함된다.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⁹⁾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하며,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그리고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은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제1항).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법 제49조제2항)을 제외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8) 2004년 12월 31일 개정에서 기존의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는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는 생태계보전에 치중하여 강변,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9)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시행령 제7조 제1항).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법 제46조제2항 본문)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탄광·채굴사업¹⁰⁾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에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동조 제3항). 이렇게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며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항).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법 제49조 본문).

-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의보전기관의 지원(제7조 제2항)
-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제14조)
-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제18조)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제19조)
- 우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제20조 제1항)
-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제22조)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제37조)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38조)
-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제44조)
- 생태통로 설치사업(제45조)
-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¹¹⁾

10)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탄광·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이상인 노천탄광·채굴사업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6조).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름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시행령 제45조).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법 제1조).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으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법 제4조 제1항).¹²⁾ 현재까지 습지를 자연공원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지만¹³⁾, 자연공원의 지정에 있어서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을 모두 고려하고, 특히 자연생태계, 자연경관에 있어서는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하거나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을 요한다(법 시행령 별표1 참조)는 점에서 습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동법은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사업 이외에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법 제23조 제1항).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하는 행위
-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을 잡는 행위
-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을 채취하는 행위

12) 자연공원의 지정에 있어서는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을 모두 고려한다. 특히 자연생태계, 자연경관에 있어서는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하거나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을 요한다(동법 시행령 별표1 참조).

13) 국립공원관리공단인 순천만과 강화갯벌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지역이 실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67년 지리산이 처음 국립공원이 된 이후 1988년까지 모두 20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이후에는 태백산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공단이나 환경부 내부의 논의 차원에 그쳤었다... 공단의 구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습지인 이들 지역을 오는 10월 창원에서 열리는 '2008 람사르총회'에 앞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습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습지 보호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공표하겠다는 의다. <순천만·강화갯벌' 20년만에 새 국립공원될까>, 연합뉴스, 2008년 4월 24일.

-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한, 공원관리청이 제23조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그리고 공원관리청이 허가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¹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¹⁵⁾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3조 제3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동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대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5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이와 더불어 환경부장관에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에

14)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광업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초지법」, 「도로법」, 「사도법」, 「군사시설 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71조 제2항).

15)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①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③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④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⑥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제13조 제2항). 이와 함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에서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환경부령이 지정한 야생동물보호지역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수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54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¹⁶⁾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제도이다. 동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매립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 간척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내륙습지나 갯벌 등의 개발 및 간척사업에 있어서 「습지보전법」이나 「연안관리법」 제정 이전부터 습지의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담당해 왔으며, 습지지역 등의 훼손되기 이전에 동지역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 해양환경관리법(구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은 비록 습지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규정은 없지만, 해양의 환경관리 및 유류 등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는 갯벌 등 연안습지 환경을 보전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동법은 제7조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훼손·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16)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도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2008년 03월 28일 법률 제 9037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17) 대규모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나타남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006년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의결하였는데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73개 사업 가운데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유수면매립 등 36개 사업에 대해 법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15만㎡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일보, 2006년 11월 16일자 참조.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염자부담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법 제19조),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및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 하천법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넓은 의미에서 하천 역시 습지의 일부이고 하천의 정비사업 등이 습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정비·보전 및 홍수예방을 위한 관리 등이 습지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은 국가가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제3조 제1항),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이밖에 하천의 구분 및 지정(제7조),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제11조의2),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22조), 홍수예보시설의 설치(제25조의2),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습지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규정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등과 관련한 규정들이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더불어 하천 안에서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할 수 있다(제46조).¹⁸⁾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

18) 금지되는 행위에는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행위(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이다.

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은 습지와 관련하여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25조),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제38조),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제43조), 습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제46조), 서식지 및 습지의 복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제49조).

동법에 따르면 습지를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 상황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 해양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동법은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습지를 포함한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의 보호를 위한 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제19조)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구역을 말한다.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해양생태계 및 습지를 포함한 서식지에 관한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관해서 동법은 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 등의 육성·지원
- 해양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는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와 더불어 습지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포함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시설
- 해양경관보호구역의 경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동법은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란지 및 서식지이거나 또는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6조).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자연해안·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습지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습지를 비롯한 해양생태계를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동법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제49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광 및 채굴사업
-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바닷가 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¹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²⁰⁾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은 수질 보전 중심에서 수생태계 보전을 추가함으로써 습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제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제10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제21조의2),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질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공공수역의 생물학적 중요성을 고려

19)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은 2, 항만구역 외의 지역은 4이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20) 구수질환경보전법은 2007년 5월 17일에 법률 제8466호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동법은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하여 수생태계 보전의 측면을 강화하였다.

<표 7-1> 습지 관련 법령 현황

법령	목적 및 내용	비고
습지보전법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1999.2 제정
해양생태계의보전 및 관리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	2006.10 제정
연안관리법	-연안환경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제정 -5년마다 실시되는 연안기초조사를 토대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안과 관련한 각종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	1999.2 제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목적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에 대한 허가와 행위제한, 공유수면에 폐기물 등 투기금지	1961.12 제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환경친화적 매립 및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계획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의 매립을 허용함	1962.1 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국민의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1991.12 제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정 -공원지역 지정에 있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 하거나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한	1980.1 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	2004.2 제정
환경영향평가법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도시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특정지역 개발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이 있음	1993.12 제정
해양환경관리법 (舊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 -오염자부담원칙,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해양환경복원 등의 사업의 시행	2007.1 제정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절하게 관리·보전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2007.5 수질환경 보전법에서 변경

하천법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1961.12 제정
-----	---	---------------

2) 습지보전기본계획

최근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습지를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환경단체, 각 시도,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습지보전기본계획(2007)』을 수립하였다. 『습지보전기본계획(2007)』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환경부의 내륙습지보전기초계획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을 토대로 수립하는 5개년 중기계획이다.

이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통해 『인간과 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습지의 보전·관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습지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등의 4대 실천목표와 2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표 7-2> 습지보전기본계획 4대 실천목표 및 22개 중점 추진과제

실천목표	추진과제
1.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	1-1 법령·제도 등 정비 1-2 습지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1-3 하구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1-4 습지보전 재원 확보
2.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2-1 습지 생태계 조사 2-2 습지보호지역 관리의 효율화·전문화 추진 2-3 습지보호지역 지정확대 및 관리강화 2-4 습지복원 기반 구축 2-5 수변습지·저류지 및 연안습지의 생태보전 및 복원 2-6 국가습지정보 DB 구축 및 습지인벤티리 구축 2-7 습지보전·이용시설의 확충
3. 습지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	3-1 습지 고유종 및 희귀종 발굴 보호 3-2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3-3 국제협력 활성화 3-4 습지보전 관련 남북 환경협력 활성화 3-5 동북아생태네트워크 구축 3-6 G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습지보전 활동강화
4.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4-1 습지 홍보강화 4-2 대상별 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3 습지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시스템 구축 4-4 지역주민의 습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4-5 습지연구기관 육성

※ 출처: 환경부·해양수산부, 2007.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사업이다. 개발사업 계획시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습지보호지역 인근지역 주민지원, 습지총량제 도입 등 습지보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습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및 국민신탁법에 의한 습지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둘째는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다. 습지생태계 조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습지보호지정의 객관성과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06년:18개소 →'11년:28개소) 및 람사르습지 등록('06년: 5개소 →'11년:10개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 이외의 습지 중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및 습지명예안내인을 배치하여 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입법으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셋째는 습지보전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이다. 습지보전에 대한 람사르협약 및 지역별 습지보전 네트워크 가입강화(오리기러기네트워크 등) 등 습지 생물다양성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습지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 공동으로 비무장지대(DMZ)생태조사, 멸종위기종 서식실태조사, 서해연안 갯벌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남북한 습지보전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넷째는 습지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이다.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초·중·고·대학교 및 일반인 등에 습지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대학,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는 계획의 실현방안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와 같은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생태계 조사 등 22개 사업에 총 1,300여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습지보전기본계획상의 중점추진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습지관련정책 및 2012년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은 다음 <표 7-3>과 같다.

〈표 7-3〉 연도별 습지보전기본계획 투자소요:총괄

구 분	계	투자소요(단위:백만원)	
		환경부	해양수산부
계	130,507	61,356	69,151
습지관리제도 기반구축	10,200	2,250	7,950
습지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00,438	46,737	53,701
습지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11,587	9,887	1,700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8,282	2,482	5,800

※ 출처: 환경부·해양수산부, 2007. 습지보전기본계획

정부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습지생태계를 유지·조성하기 위해 2007~2011(5년간) 총 130,50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같은 소요재원은 각 부처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요율 인상을 통한 복원사업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한다.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요율은 복원사업 규모 확대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250원/m²→950원/m²)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도 부과요율을 인상(250원/m²→950원/m²)하여 부과대상사업에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등 재원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친생태계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밖에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민간차원에서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NT)운동 활성화 등을 통해 습지부분에 대한 민간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3)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1999년 제정된 습지보전법 제11조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규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기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보전계획을 합리적·현실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²¹⁾

각 습지보호지역별 관리방안은 다음 <표 7-4>^{22), 23), 24), 25), 26), 27)}와 같다.

21) 방상원 외. 2007. 습지총량제 도입 방안 구축사업. 환경부

22) 환경부. 2003.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23) 영산강유역환경청. 2006. 담양 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24) 영산강유역환경청. 2006. 신안 장도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25) 낙동강유역환경청. 2005. 신불산 고산습지 보전계획

26) 한강유역환경청. 2007.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27) 낙동강유역환경청. 2008.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표 7-4>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기본관리방향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지역주민 지원방안	기타
낙동강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 매년 3월15일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 개발에 의한 영향 최소화 ○ 불법어로 통제 ○ 폐어구 제거 및 감시선 운영 ○ 오·폐수로 인한 해역오염 예방 ○ 외래종의 제거 ○ 유관기관간 상시 협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기행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 자연 학습탐방 프로그램 개발·시행 ○ 생태관광기반 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대암산 용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총괄 ○ 약4,000~4,500년전에 형성된 고층습원으로서 훼손지 복원을 통한 습지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함 ○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 매년 3월15일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통제 및 동·식물 채집 제한 ○ 군부대 오·폐수 관리대책 ○ 습지 복원사업의 추진 ○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형성 ○ 작은 용늪의 식생 복원·복구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계측기 점검, 수위, 일사량, 강우량 등 자동기록사항 확인 및 - 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우포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 습지보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함 ○ 사유지매입, 감시원고용 및 상시감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등은 창녕군에서 담당 ○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 매년 3월15일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및 수질의 유지·관리 ○ 차폐수림대의 조성 ○ 불법어업 근절 ○ 매입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 외래종의 제거 ○ 둔터마을의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상품의 개발 ○ 생태주거단지 및 숙박시설 운영 ○ 환경농법 사용 ○ 제도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유지 매입
무제치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자연 그대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함 ○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 매년 3월15일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 유입의 차단 및 녹화, 식생보전 ○ 출입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학습탐방 프로그램 개발·시행 ○ 관광상품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물영아리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함 ○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 매년 3월15일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조립한 식생을 배제한 참식나무의 생육공간 확보 및 상록활엽수림으로의 천이속도 증가를 위한 간벌 등의 조치를 산림전문가 자문 및 관계 산림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학습탐방 프로그램 개발·시행 ○ 관광상품의 개발 ○ 생태관광기반 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화염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함 ○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 매년 3월15일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의 유지 및 관리 ○ 훼손지의 복원 ○ 출입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학습탐방 프로그램 개발·시행 ○ 관광상품의 개발 ○ 생태관광기반 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두용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관리 ○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함 ○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 매년 3월15일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 및 주변지역 생태계 관리 ○ 지하수위 유지 ○ 생태통로의 확보 ○ 포괄적인 사구습지 관리 ○ 외부 유입종의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용습지 습지 보호지역은 전체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신불산고산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함 ○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은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지의 복원 ○ 출입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생태상에 관한 홍보물 발간, 전문안내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담양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보전 ○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 및 서식지 보전 ○ 습지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습지자원의 보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 ○ 대나무숲의 지속적인 관리 ○ 친환경적인 어도(Fishway)의 설치 ○ 둔치에 습지환경 조성 ○ 외래종의 제거 ○ 겨울철 제방부위의 소각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연재해의 방지 ○ 친환경농업 권장·지원 ○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지역주민의 자긍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 분기 1회 ○ 정밀조사 : 3년마다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신안장도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 및 관리 ○ 희귀동·식물의 서식지 보호 및 관리 ○ 수자원의 보호 및 관리 ○ 습지자원의 보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규모의 탐방객 출입관리 ○ 산림성 목본류 식물에 대한 관리 ○ 가축방목사육 금지 ○ 화재에 대한 예방 및 관리 ○ 사유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초시설 확충 ○ 지속적인 식수원 확보 ○ 지역주민의 자긍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 분기 1회 ○ 정밀조사 : 3년마다 ○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한강하구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습지보호지역을 자연 상태로 보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관리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한 강하구 생태계의 보전 ○ 생태계 보전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통한 하구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하구습지의 친환경적 관리 ○ 습지자원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 습지복원 ○ 생태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지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제도의 확대 시행 등 주민지원 강화 ○ 습지 관리인력에 지역주민 우선 참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5년마다 ○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재약산고산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 관리 ○ 건강한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이용체계 구축 ○ 생태계 보전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유지 ○ 습지의 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한 친환경적 관리 ○ 습지자원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 ○ 습지보전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들늪 생물종 보전을 위한 현지 내외의 보전 계획 수립 ○ 외래종 관리 ○ 불량경관지역이나 조경지역에 자생종을 이용한 사면녹화사업 추진 ○ 조립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들늪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 산들늪 생태체험 및 축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수질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동·식물상 모니터링 : 분기 1회 이상 ○ 정밀조사 : 매 3년마다 1회 이상 ○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방상원 외. 2007. 습지총량제 도입 방안 구축사업. 환경부
- 환경부. 2003.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 영산강유역환경청. 2006. 담양 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 영산강유역환경청. 2006. 신안 장도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 낙동강유역환경청. 2005. 신불산 고산습지 보전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2007.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 낙동강유역환경청. 2008.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